

## 학생 자치기구 간부 선임 규정

**제1조(목적)** 본 대학 학생회 부서장 및 학생 자치기구 간부는 본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다.

**제2조(자격)** 학생회 부서장 및 자치기구 간부의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품행이 단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.
2.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고 전 학기 학업성적이 2.5 이상인 자.
3.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.
4. 출석 상황이 양호한 자.

**제3조(임명)** 학생회 각 부서장은 학생회장이 선발하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1.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서
2. 성적 증명서

**제4조(대의원)** 대의원은 각 학과에서 제2조에 근거하여 선출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5조(임기)** 학생회 간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**제6조(수속)** 학생회 부서장은 선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3조의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해임)** 학생회 간부 및 학생자치기구 간부에 선임된 자라도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은 자동 해임된다.

**제8조**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례 및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본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